## 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☑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전자금융업자가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4조의2에 따라 본인이 운영하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
	□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경우 동 규정 제3항에 따른 사전보고 제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
판단	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4조의2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.
	□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전보고시 위탁계약서 등 위탁관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 상용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판단이유	□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4조의2에서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	<ul><li>다만, 이 경우에도 중요도 평가 등 동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.</li></ul>
	□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전보고시 위탁계약서 등 위탁관계에 따른 서류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 상용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된 서류로 대체*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	★ 예)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 → 상용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운영 기준
	○ 세부적인 제출서류 및 보고절차는 금융감독원 담당자(02-3145-742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